

의 안 번 호	제968호
의 결 연 월 일	. . . (제 회)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
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산업경제위원장
제안연월일	2025년 4월 22일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68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4월 22일

제안자 : 산업경제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조례로 명확히 정하여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사업에 ‘지역대학육성 사업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’을 신설하여 RISE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(안 제4조제1항 4호)
- 사업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내에서의 위임·위탁사업, 수익사업 신설 (안 제4조제1항 5호 및 6호)
- 진흥원의 사업을 조례로서 규정하고, 정관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4조제2항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조례안예고 : 2025. 4. 15. ~ 4. 20.

○ 협 의 : 과학인재국 미래인재육성과

○ 비 용 추 계 : 붙임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부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5호부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역 인재 발굴·육성 및 장학사업
2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
3.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 사업
4. 지역대학육성 사업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
5. 진흥원의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
6. 진흥원 설립목적의 범위 내 수익사업
7.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	제4조(사업) ① ----- -----.
1. 지역 <u>우수</u> 인재 발굴·양성사업	1. 지역 인재 발굴·육성 및 장학사업
가. <u>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</u>	
나. <u>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 및 도민 자녀 장학사업</u>	
다. <u>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 사업</u>	
라. <u>과학·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</u>	
마. <u>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</u>	
2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제2항에서 <u>정한 업무와 다음 각 목의 사업</u>	2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제2항에서 <u>정한 업무</u>
가. <u>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·연구·조사·컨설팅</u>	
나. <u>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</u>	
다. <u>문해교육센터 운영</u>	

3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

<신 설>

4.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삭 제>

3.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 사업

<삭 제>

4. 지역대학육성 사업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

5. 진흥원의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

6. 진흥원 설립목적의 범위 내 수익사업

7.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지정·고시 등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- 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
2. 주요 업무와 사업
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